

# 행 정 자 치 부

## 시 정 요 구

제 목 ○○(○○○○○) 보안관리 업무 부적정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거창군

내 용

경상남도 거창군에서는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에 따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,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·생활·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.

「전자정부법」 제4조에 따르면 행정기관 등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·신뢰성을 확보와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·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·운영 등 기술적·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,

정보의 불법 유출·위조·변조·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,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·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그러나 위 기관에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,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○○○○ 등 ○○개의 ○○(○○○○○)를 운용하면서 0000년도에는 ○○○○○ 종합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○○○○, ○○○○○

○등 ○○○○○의 ○○○○에 대하여 ○○하고 ○○○○ 등을 수행하였으나  
0000년도에는 감사일 현재까지 계획 수립 등 ○○(○○○○○) 보안관련 업무를  
수행하지 않아 ○○의 ○○ ○○·○○·○○·○○ 등이 ○○할 가능성이 있도  
록 방치한 사실이 있다.

#### 조치할 사항          거창군수는

○○(○○○○○)에 대한 보안점검 계획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○○(○○○○  
○)의 ○○○ 등이 ○○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.